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 2023-103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추가 규정

2.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확대
(안 제48조제1항 개정)

개인투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투자확인서 발급,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대한 권한을 추가적으로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일까지 통합입법 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

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80 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 전자우편/팩스 : gym1222@korea.kr / 044-204-77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전화 044-204-7726, 팩스 044-204-77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개인”을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
5. 법 제9조에 따른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부 칙

이 영은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p> <p>1. (생략)</p> <p><u><신 설></u></p> <p>2. (생략)</p> <p>3. 제45조에 따른 <u>개인</u>에 대한 투자확인서의 발급 및 투자실적 확인 자료 제출 요청</p> <p><u><신 설></u></p> <p>② ~ ⑥ (생략)</p>	<p>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u>개인투자조합의 해산 및 청산</u></p> <p>3. (현행 제2호와 같음)</p> <p>4. ----- <u>개인 또는 개인 투자조합</u>----- -----</p> <p>5. 법 제9조에 따른 <u>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u></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연 락 처	(044) 204 - 7726